

이사회 규정

(개정 2026.4.29.)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권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(본조 신설 2025.3.31)

제 4 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5.3.31)

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 6 조 제 1 항의 단서에 따른 이사를 정한 경우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5.3.31)

③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이사회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(신설 2025.3.31, 개정 2025.4.29)

④ 이사회에는 1 인의 간사를 두고 간사를 기획담당부서장으로 한다. 간사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 회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05.11.1, 2018.7.30)

제 5 조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(개정 2018.7.30)

제 6 조(소집)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25.3.31)

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 일전에 각 이사에 이사회 소집통지서(제 1 호 서식) 및 이사회 부의안(제 2 호 서식)을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(개정 2025.3.31, 개정 2026.2.5.)

제 7 조(결의방법)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그 외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(개정 2025.3.31)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25.3.31)

제 8 조(결의사항)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본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과 상법,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이 상이할 경우 상법과 정관을 우선 적용한다. (개정 2026.2.5.)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)
- (4) 정관의 변경 (신설 2025.3.31)
- (5) 이사·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6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) (신설 2025.3.31)
- (7) 이사의 보수
- (8) 그외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(신설 2026.2.5)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(신설 2025.3.31)

- (5)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 및 상무의 선임 및 해임 (신설 2025.3.31, 개정 2026.2.5.)
- (6) 공동대표의 결정 (신설 2025.3.31)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 (신설 2025.3.31)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(신설 2025.3.31)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(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) (신설 2025.3.31)
- (10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,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
- (12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- (13)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
- (14) 영업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쇄
- (15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(신설 2025.3.31)
- (16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(신설 2025.3.31)
- (17)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(개정 2018.7.1)
- (18) 임원의 징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결손의 처분 (신설 2025.3.31)
- (4) 신주의 발행
- (5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6) 준비금, 잉여금, 적립금의 자본전입
- (7) 전환사채의 발행 (신설 2025.3.31)
- (8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(신설 2025.3.31)
- (9)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0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 (신설 2025.3.31)
- (11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 (신설 2025.3.31)
- (12) 자기주식의 소각 (신설 2025.3.31)

- (13) 한도거래에 의한 장기차입(은행 당좌차월 및 한국증권금융 등)
- (14)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(개정 2018.7.1)
- (15)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또는 회수 (개정 2018.7.1)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의 보수, 상여금 및 수당의 결정 (개정 2026.2.5.)
- (2) 이사 종류(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)의 결정 (신설 2025.3.31)
- (3) 상법 제 398 조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(신설 2025.3.31, 개정 2026.2.5.)
- (4) 상법 제 397 조의 2 에 의한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(신설 2025.3.31, 개정 2026.2.5.)
- (5) 타회사의 임원 겸임 (신설 2025.3.31)

5.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(신설 2005.11.1)

- (1)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(개정 2016.8.1, 개정 2026.4.29.)
- (2) 순자본비율, 자산부채비율, 레버리지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 시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(개정 2016.8.1)
- (3) (삭제 2026.4.29.)
- (4) 상기 이외의 위험관리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함

6. 내부통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(신설 2025.3.31)

- (1)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(신설 2025.3.31)
- (2)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및 개폐 (신설 2025.3.31)
- (3)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제정 및 개폐 (신설 2025.3.31)
- (4) 기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, 금융거래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(신설 2025.3.31)

7. 기타 사항 (개정 2016.8.1)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수행
- (2)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
- (3)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
- (4) 임직원에게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

(5) 주택자금 대출한도 증액

(6) 기타 법령, 정관, 사규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8 조(회의장소) (삭제 2025.3.31)

제 9 조(보고사항)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표이사나 이사회 내 위원회 등에게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
한 사항
3. 관련법규 및 규범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(본조 신설 2025.3.31)

제 10 조(이사회 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.

1. 위험관리위원회
 2. 내부통제위원회
 3. 감사위원회
 4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 5. 보수위원회
 6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1. 주주총회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- 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6 조, 제 7 조, 제 13 조를 준용한다.

(본조 신설 2025.3.31)

제 11 조(관계자의 출석)

① (삭제 2026. 2. 5)

② 이사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(개정 2026.2.5.)

제 12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(본조 신설 2025.3.31)

제 13 조(의사록)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(제 3 호 서식)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및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(개정 2025.3.31, 개정 2026.2.5.)

부 칙

이 규정은 1993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 6 조, 제 8 조, 제 11 조, 제 13 조, 제 1 호 및 제 3 호 서식의 감사 폐지는
감사위원회 설치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4 조제 1 항 개정규정은
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(제 1 호 서식)

이사회 소집통지서

금번 제 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최일자 : 년 월 일

장 소 :

의 안 : 1.

2.

3.

년 월 일

한 양 증 권 주 식 회 사

대표이사 (인)

이사 귀하

(제 2 호 서식)

이 사 회 부 의 안

(. .)

소관부서 :

1. 건명
2. 부의취지
3. 부의안건 요지
4. 부의근거
5. 참고사항

(제 3 호 서식)

이 사 회 의 사 록

일 시 :

장 소 :

출석이사

이사총수 : 출석이사수 :

의장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심의완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
인하다.

년 월 일

한 양 증 권 주 식 회 사

이 사 ××× (인)

이 사 ××× (인)